

##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19.10.28

개정 2022.02.21

개정 2023.08.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정규 교육과정’이란 본 대학 정규교육과정과 연관되어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정규 교육과정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장)** ① 비정규 교육과정의 총괄적인 운영은 본 대학 교육개발처에서 담당하며,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아 비정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과 성과분석, 개선 계획을 총괄한다.

② 비정규 교육과정의 운영 분야와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전반의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성과 및 환류 체계 관리: 교육개발처
2. 전공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스쿨 및 학과
3. 대학 교양교육 목표기반 관련 프로그램 운영: 교양교육원(리케이온)
4. 기초 학습 및 핵심역량 진단 및 후속 프로그램,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스쿨(학과)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관련 담당부서
5. 진로 및 심리 검사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진로 및 심리관련 검사 및 관련 프로그램 담당 부서
6.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담당 부서
7. 기초학습 및 인문·문화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습 및 인문·문화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 부서
8. 글로벌 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 담당 부서
9. 기타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관련 담당 부서

**제5조(비정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비정규 교육과정은 본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육목표 등에서 정한 인재상을 양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② 전년도의 성과분석 결과 혹은 요구조사를 토대로 편성한다.

③ 비정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정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2. 비정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년도 성과분석 혹은 요구 분석

3. 핵심 역량 기반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4.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5. 비정규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6. 비정규 교육과정 결과보고
7. 각 시행 부서별 비정규 교육과정 총괄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성과 분석

**제6조(평가 및 환류)** ①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에는 평가와 환류를 실시한다.

- ② 평가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기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계획 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며, 프로그램의 환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③ 환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사항을 결정하여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에 반영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하기 위하여 비정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본 대학 핵심 역량 기반 비정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비정규 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비정규 교육과정의 환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육개발처장이 맡는다.
2. 제 4조 2항에 명시한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3.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교육개발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4. 간사는 교육개발처 담당자가 맡는다.

**부 칙**

(시행일) 위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